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단5112495(본소), 2020가단41338(반소) 판결
[대여금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 론 종 결 2021. 4. 8.

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086,411원과 그 중 15,433,600원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 5,652,811원에 대하여 201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893,970원과 그 중 19,235,354원에 대하여 2019. 11. 19.부터, 23,658,616원에 대하여 2019.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02. 4. 14. C이라는 상호로 서울 중구 D빌딩 19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대부업 등록을 한 이후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 변경을 거쳐서 현재는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① 2013. 1. 22. 30,000,000원(‘이 사건 대여금1’이라고 한다)을 이자 월 3%, 변제기일 2015. 1. 22.로 정하여 대여하고, ② 2013. 3. 6. 27,000,000원(‘이 사건 대여금2’라고 한다)을 이자 월 3.25%, 변제기일 2015. 3. 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① 이 사건 대여금1과 관련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 22.부터 2019. 11. 15.까지 53회에 걸쳐서 합계 87,6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위 금원을 약정이율인 연 36%의 비율에 따라서 발생한 이자의 변제에 지정하여 충당하는 한편, ㉡ 피고가 원고에게 2019. 5.부터 2019. 11. 15.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서 합계 14,566,4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위 금원을 원금의 변제에 지정하여 충당하고, ② 이 사건 대여금2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 피고가 원고에게 2013. 3. 6.부터 2019. 3. 8.까지 48회에 걸쳐서 합계 74,364,5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위 금원을 약정이율인 연 39%의 비율에 따라서 발생한 이자의 변제에 지정하여 충당하고, ㉣ 피고가 원고에게 2016. 5. 30.부터 2019. 3. 8.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서 합계 21,347,189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위 금원을 원금의 변제에 지정하여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2,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대부업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들을 대여하였고 당시 약정한 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의 것으로서 정당하며, 이와 같이 발생한 원리금 중 피고가 그 이후 원고에게 변제한 돈은 지급 당시 밀린 이자에 먼저 변제하고 잔여금을 원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여, 이 사건 대여금1, 2의 잔여 원금은 합계 21,086,411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086,411원과 그 중 이 사건 대여금1의 잔여원금 15,433,6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대여금2의 잔여원금 5,652,811원에 대하여는 201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정당하게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대여금1, 2에 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연 30%의 법정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1과 관련하여 상환한 87,600,000원을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에 있어서 이자의 충당과 관련하여 연 45%의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19,235,354원의 이자를 초과로 지급받았으며,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2와 관련하여 상환한 74,092,500원을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에 있어서 이자의 충당과 관련하여 연 60.3%의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23,658,616원의 이자를 초과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 명목의 금원 합계 42,893,970원(19,235,354 + 23,658,616)과 그 중 19,235,35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대여금1을 변제한 날의 다음날인 2013.

11. 19.부터, 23,658,61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대여금2를 변제한 날의 다음날인 2013. 3.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 1, 2에 적용되는 이자율

원고가 2002. 4. 14. C이라는 상호로 서울 중구 D빌딩 19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대부업 등록을 한 이후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 변경을 거쳐서 현재는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대부업자로서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대여금 1, 2의 이자에 관한 약정이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서 2010. 7. 21. 이후에 성립된 계약은 연 44%, 2011. 6. 27. 이후에 성립된 계약은 연 39%, 2014. 4. 2. 이후 성립된 계약(2015. 12. 31.까지만 유효)은 연 34.9%를 각 상한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된다. 보건대, 이 사건 대여금1, 2에 관한 각 소비대차계약은 2013. 1. 22.과 2013. 3. 6. 각 성립하였으며 당시 적용되는 대부업법에 따른 약정이율의 상한은 위와 같이 연 39%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이 사건 대여금1에 관한 이자율인 월 3%(연 36%)와 이 사건 대여금2에 관한 이자율인 월 3.25%(연 39%)는 위 약정이율의 상한을 넘지 않은 것으로서 비록 그것이 이자제한법을 포함한 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서 높은 것이기는 하나 유효하고, 달리 이를 감액할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1, 2에 관하여 발생한 이자는 위와 같이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서 계산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부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2. 4. 14 대부업자로 등록된 이상 그 이후 사업장이나 상호가 변경된 사정은 등록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황과 변제충당

㉠ 이 사건 대여금1과 관련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 22.부터 2019. 11. 15.까지 53회에 걸쳐서 합계 87,6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위 금원을 위와 같이 유효한 약정이율인 연 36%의 비율에 따라서 발생한 이자의 변제에 지정하여 충당하는 한편, ㉢ 피고가 원고에게 2019. 5.부터 2019. 11. 15.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서 합계 14,566,4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위 금원을 원금의 변제에 지정하여 충당하고, ② 이 사건 대여금2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 피고가 원고에게 2013. 3. 6.부터 2019. 3. 8.까지 48회에 걸쳐서 합계 74,364,5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위 금원을 위와 같이 유효한 약정이율인 연 39%의 비율에 따라서 발생한 이자의 변제에 지정하여 충당하고, ㉡ 피고가 원고에게 2016. 5. 30.부터 2019. 3. 8.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서 합계 21,347,189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위 금원을 원금의 변제에 지정하여 충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1에 관하여는 15,433,600원, 이 사건 대여금2에 관하여는 5,652,811원이 각 원금의 일부로서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

피고는 원고가 약정이율을 초과한 연 45% 및 60.3%의 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대여금1, 2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계산하였고, 원고가 상환한 돈을 임의로 이와 같이 무효인 초과이자 부분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을3, 5, 6의 각 기재는 원고가 정리하여 변경한 청구취지 변경서 상의 청구금액을 달리 볼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1의 미변제 원금 15,433,600원과 이 사건 대여금2의 미변제원금 5,652,811원의 합계 21,086,411원(15,433,600 + 5,652,811)과 그 중 대여금1의 미변제 원금 15,433,600원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6%의, 이 사건 대여금2의 미변제원금 5,652,811원에 대하여 201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9%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일

(별지 1)

대출금 명세표

대출일자 2013. 1. 22 원금: 30,000,000 이율 연 36% (월 3%)

일 자	입금액	이자납부		원금상환	발생이자		대수이자	대출잔액	비고
		당해월	금 액		개월수	금액			
2013 1. 22	1,800,000	2013. 1~2월	1,800,000					30,000,000	
3월	900,000	3월	900,000						
4월	900,000	4월	900,000						
5월	900,000	5월	900,000						
6월	900,000	6월	900,000						
7. 2	900,000	7월	900,000						
8. 6	900,000	8월	900,000						
10. 9	900,000	9월	900,000						
11. 13	900,000	10월	900,000						
12. 12	900,000	11월	900,000						
2014 1. 23	900,000	12월	900,000						
3. 3	900,000	2014. 1월	900,000						
3. 31	900,000	2월	900,000						
4. 25	900,000	3월	900,000						
6. 13	900,000	4월	900,000						

대출일자 2013. 1. 22 원금: 30,000,000 이율 연 36% (월 3%)

일 자	입금액	이자납부		원금상환	발생이자		미수이자	대출잔액	비고
		당해월	금 액		개월수	금액			
7. 15	900,000	5월	900,000						
8. 14	900,000	6월	900,000						
9. 2	900,000	7월	900,000						
10. 16	1,800,000	8~9월	1,800,000						
12. 24	1,800,000	10~11월	1,800,000						
2015 2. 23	900,000	2014. 12월	900,000						
4. 8	1,800,000	2015. 1~2월	1,800,000						
6. 25	900,000	3월	900,000						
7. 31	900,000	4월	900,000						
8. 31	900,000	5월	900,000						
9. 28	900,000	6월	900,000						
10. 26	900,000	7월	900,000						
11.22	900,000	8월	900,000						
2016 1. 8	900,000	9월	900,000						
2. 3	900,000	10월	900,000						
3. 10	1,800,000	11~12월	1,800,000						
3. 23	900,000	2016. 1월	900,000						
5. 16	1,800,000	2~3월	1,800,000						

대출일자 2013. 1. 22 원금: 30,000,000 이율 연 36% (월 3%)

일 자	입금액	이자납부		원금상환	발생이자		미수이자	대출잔액	비고
		당해월	금 액		개월수	금액			
9. 2	900,000	4월	900,000						
9. 25	900,000	5월	900,000						
9. 27	1,800,000	6~7월	1,800,000						
9. 29	900,000	8월	900,000						
11. 28	900,000	9월	900,000						
2017 2. 15	1,800,000	2016. 10~11월	1,800,000						
5. 2	3,600,000	2017.12월 ~ 2018. 3월	3,600,000						
8. 31	2,700,000	2018. 4~6월	2,700,000						
12. 30	1,800,000	7~8월	1,800,000						
2018 4. 17	1,800,000	9~10월	1,800,000						
4. 27	1,800,000	11~12월	1,800,000						
6. 30	1,800,000	2018. 1~2월	1,800,000						
8. 31	1,800,000	3~4월	1,800,000						
		2018.5~2019.3			11	9,900,000	9,900,000		
2019 3. 29	6,000,000		6,000,000				3,900,000		
		2019.4월			1	900,000	4,800,000		
4. 30	3,000,000		3,000,000				1,800,000		
		2019.5월			1	900,000	2,700,000		

대출일자 2013. 1. 22 원금 30,000,000 이율 연 36% (월 3%)

일 자	입금액	이자납부		원금상환	발생이자		미수이자	대출잔액	비고
		당해월	금 액		개월수	금액			
5.15 5.31	6,000,000		2,700,000	3,300,000				26,700,000	
		2019.6월			1	801,000	801,000		
6. 27	3,000,000		801,000	2,199,000				24,501,000	
		2019.7월			1	735,030	735,030		
7. 15	6,000,000		735,030	5,264,970				19,236,030	
		2019.8월			1	577,080	577,080		
		2019.9월			1	577,080	1,154,160		
2019 9. 17	3,000,000		1,154,160	1,845,840				17,390,190	
		2019.10월			1	521,705	521,705		
		2019.11월			1	521,705	1,043,410		
2019 11. 15	3,000,000		1,043,410	1,956,590				15,433,600	
계	87,600,000		73,033,600	14,566,400					

(별지 2)

대출금 명세표

대출일자 2013. 3. 6 금액 : 27000000 이율 연 39% (월 3.25%)

일 자	입금액	이자납부		원금상환	발생이자		미수이자	대출잔액	비고
		당월월	금 액		개월수	금액			
2013. 3. 6	1,755,000	2013. 3~4월	1,755,000					27,000,000	
5. 11	877,500	5월	877,500						
6. 14	877,500	6월	877,500						
7. 16	877,500	7월	877,500						
8. 16	877,500	8월	877,500						
9. 12	877,500	9월	877,500						
10. 20	877,500	10월	877,500						
11. 25	877,500	11월	877,500						
12. 31	877,500	12월	877,500						
2014. 2. 20	877,500	2014. 1월	877,500						
3. 12	877,500	2월	877,500						
3. 31	877,500	3월	877,500						
5. 14	877,500	4월	877,500						
6. 30	877,500	5월	877,500						
8. 14	877,500	6월	877,500						
9. 2	877,500	7월	877,500						
9. 25	877,500	8월	877,500						
10. 16	877,500	9월	877,500						
12. 24	1,755,000	10~11월	1,755,000						

대출일자 2013. 3. 6 금액: 27000000 이율 연 39% (월 3.25%)

일 자	입금액	이자납부		원금상환	발생이자		미수이자	대출잔액	비고
		당해월	금 액		개월수	금액			
2015. 2. 23	877,500	2014. 12월	877,500						
5.13	1,755,000	2015. 1~2월	1,755,000						
6. 25	877,500	3월	877,500						
7. 31	877,500	4월	877,500						
8. 31	877,500	5월	877,500						
9. 28	877,500	6월	877,500						
10. 26	877,500	7월	877,500						
11. 22	877,500	8월	877,500						
2016. 1. 8	877,500	9월	877,500						
2. 3	877,500	10월	877,500						
3. 10	1,755,000	11~12월	1,755,000						
3. 23	877,500	2016. 1월	877,500						
5. 16	1,755,000	2~3월	1,755,000						
5. 30	9,000,000			9,000,000				18,000,000	
9. 2	877,000	4월	877,000						
9. 25	585,000	5월	585,000						
9. 27	1,170,000	6~7월	1,170,000						
9. 29	585,000	8월	585,000						
11. 28	585,000	9월	585,000						
2017. 2. 15	1,170,000	2016. 10~11월	1,170,000						
5. 2	2,320,000	2016. 12~17. 3월	2,320,000						
8. 31	1,755,000	2017. 4~6월	1,755,000						

대출일자 2013. 3. 6 금액: 27000000 이율 연 39% (월 3.25%)

일 자	입금액	이자납부		원금상환	월생이자		마수이자	대출잔액	비고
		당해월	금 액		개월수	금액			
12. 5	1,755,000	7~9월	1,755,000						
2018. 6. 1	1,755,000	10~12월	1,755,000						
6. 30	2,340,000	2018. 1~4월	2,340,000					18,000,000	
		2018.5~9월 (5개월)			5	2,925,000	2,925,000		
		10월(1개월)			1	585,000	3,510,000		
2018. 10. 19	6,000,000		3,510,000	2,490,000				15,510,000	
		11월(1월)			1	504,075	504,075		
		12월(1개월)			1	504,075	1,008,150		
		2019.1월(1개월)			1	504,075	1,512,225		
2019. 1. 31	6,000,000		1,512,225	4,487,775				11,022,225	
		2019.2월(1개월)			1	358,222	358,222		
2019. 2. 28	3,000,000		358,222	2,641,778				8,380,447	
		2019.3월(1개월)			1	272,364	272,364		
2019. 3. 8	3,000,000		272,364	2,727,636				5,652,811	
계	74,364,500		53,017,311	21,347,189					

